

「2026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공모요강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화랑의 미술작가 발굴 및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모를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6 전속작가제 지원 사업 공모
- 공고기간 : **2026년 2월 4일(수) ~ 2026년 3월 4일(수), 17:00**
- 지원기간 : '2026~'2028년 다년(3년) 지원
- 사업기간 : 매년 4~10월(총 7개월)
- 지원대상 : 작가 발굴·육성이 가능한 화랑
- 지원규모 : 50단체 내외(작가 수 기준 약 94명)
- 지원내용 : 전속작가 시장진입 지원비 및 홍보마케팅비 지원

■ 세부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단체 (화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 3년 동안 작가와 계약을 체결·유지할 단체(화랑) ① [업태: 소매업/종목: 화랑(갤러리)]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영리·비영리 단체 * 연 매출 100억 이하 화랑으로 한정,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② 사업장 소재지에 전용 전시공간을 운영하는 단체 ③ 최근 2년간(2024~2025년) 연 1회 이상 전시(내·외부, 페어 참여 등) 개최한 단체						
	전속 작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화랑과 계약을 맺은 대한민국 국적 작가 - 단, 국·공립 미술관 전시(단체전 포함) 혹은 레지던시(국·내외) 이력이 있는 작가의 경우, 공고일 기준 만 49세까지 지원 가능(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개 내외 단체(작가 수 기준 약 94명) - 선정단체 사업 수행 불가를 대비하여, 예비단체(작가 수 기준 5명) 선정 예정• 선정단체 1개당 전속작가 최대 3명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속작가 시장진입 지원비 및 홍보마케팅비 - 작가 1명당 1,500만원(국고보조금) 지원 <table><thead><tr><th>항목</th><th>지원내용</th></tr></thead><tbody><tr><td>시장진입 지원비</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진입 소요경비 일체) 작업실 임차료, 재료비, 제작비, 산재보험료 등</td></tr><tr><td>홍보 마케팅비</td><td><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활용) 비평·번역·감수·기획·평론• (온·오프라인 광고) 언론홍보, 온라인 포털, SNS, 도록·리플렛·포스터 인쇄• (전시직접경비) 전속작가 전시(페어, 기획전 등)를 위해 발생되는 비용 - 작품 운송·보험, 설치·철거, 기자재 등 물품 임차, 부스 임차비 등</td></tr></tbody></table>	항목	지원내용	시장진입 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진입 소요경비 일체) 작업실 임차료, 재료비, 제작비, 산재보험료 등	홍보 마케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활용) 비평·번역·감수·기획·평론• (온·오프라인 광고) 언론홍보, 온라인 포털, SNS, 도록·리플렛·포스터 인쇄• (전시직접경비) 전속작가 전시(페어, 기획전 등)를 위해 발생되는 비용 - 작품 운송·보험, 설치·철거, 기자재 등 물품 임차, 부스 임차비 등
항목	지원내용							
시장진입 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진입 소요경비 일체) 작업실 임차료, 재료비, 제작비, 산재보험료 등							
홍보 마케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 활용) 비평·번역·감수·기획·평론• (온·오프라인 광고) 언론홍보, 온라인 포털, SNS, 도록·리플렛·포스터 인쇄• (전시직접경비) 전속작가 전시(페어, 기획전 등)를 위해 발생되는 비용 - 작품 운송·보험, 설치·철거, 기자재 등 물품 임차, 부스 임차비 등							

이행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랑) 국고보조금 총 지원금액 내 자부담 17% 편성(작가 1명당 300만원), 사업 수행 시 작가당 비평 1개 이상 진행 필수,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기간 중 작가별 최소 연 1회 이상 전시(개인·단체·페어 참가 등) 개최 필수 (작가) 사업기간 중 연간 10개 이상 신작 제작 및 프로젝트 보고서 화랑에 제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필수 *보험가입 신청절차 및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산재보험은 가입 당해연도 계약해지 불가(12월까지 편성 필요) - 예술인 산재보험료는 시장진입 지원비에서 편성, 4등급(26,740원) 기준 권장(4~12월 총금액 240,660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예술인</td> <td style="padding: 5px;">(필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회원가입</td> </tr> <tr>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예술인</td> <td style="padding: 5px;">(선택) 예술활동증명 신청 * 보험료 지원 자격을 위해 필요, 보험 가입 이후에도 신청 가능</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예술인</td> <td style="padding: 5px;">산재보험 가입신청 *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www.kawfartist.kr) 이용, 준비서류: 통장사본</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한국예술인복지재단</td> <td style="padding: 5px;">가입신청서 확인 및 근로복지공단 접수</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근로복지공단</td> <td style="padding: 5px;">산재보험 가입승인</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5px;">↓</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padding: 5px; text-align: center;">한국예술인복지재단</td> <td style="padding: 5px;">보험가입 승인통보(→예술인)</td> </tr> </table> </div>	예술인	(필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회원가입	예술인	(선택) 예술활동증명 신청 * 보험료 지원 자격을 위해 필요, 보험 가입 이후에도 신청 가능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신청 *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www.kawfartist.kr) 이용, 준비서류: 통장사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가입신청서 확인 및 근로복지공단 접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가입승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보험가입 승인통보(→예술인)
예술인	(필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회원가입												
예술인	(선택) 예술활동증명 신청 * 보험료 지원 자격을 위해 필요, 보험 가입 이후에도 신청 가능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신청 *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www.kawfartist.kr) 이용, 준비서류: 통장사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가입신청서 확인 및 근로복지공단 접수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가입승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보험가입 승인통보(→예술인)												
다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랑) '24~'25년 A·B전속작가 지원→'26년 C전속작가 추가 지원 시 신규 공모신청 필수 1차 연도 지원 기간(4~10월)이 종료된 이후, 2차('27년)·3차('28년) 연도는 e나라 도움을 통해 사업 신청 필수 * 신청 방식은 별도 안내 예정 1차 연도 지원 기간이(4~10월) 종료된 이후, 화랑·작가 간 전속계약 중단을 원할 경우 '지원 중단 공문 및 신청서' 제출, 다음 연도 지원 종료 단체의 사업 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다음 연도 추가 모집 예정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 style="margin-bottom: 0;">2026 전속작가제 선정단체는 3년 연속 지원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다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당시 전속작가와 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다년 지원 혜택 불가(2026-2028년 연속 지원 혜택은 '26년 선정 전속작가와만 계약을 유지하였을 때 한함) - 연도별 지원 기간(4~10월) 종료 이후, 필수 이행사항을 하지 않은 단체 </div>												

■ 공모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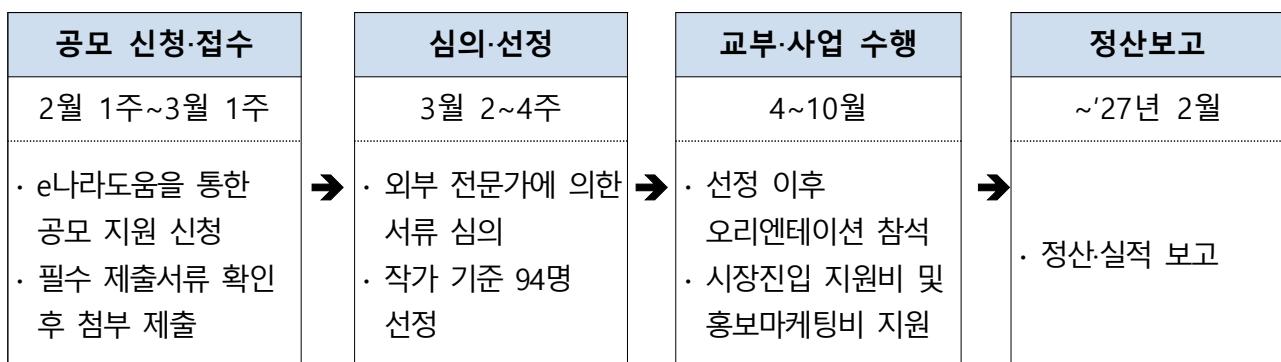
구분	내용	
신청 방법	홈페이지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신청경로	• 상단 검색엔진 > 2026 전속작가제 입력 > 검색 > 공모사업 클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나라도움 홈페이지 단체회원 가입 필수, 공인인증서 필요(개인회원 가입 불가) • e나라도움 신청 필수,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불가 • 본 공모는 예치형 사업으로, 비예치형으로 신청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 • 신청 기간 중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 누락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 문의·장애 발생 시 고객센터(1670-9595) 이용
신청기간	<p>• 2026년 2월 4일(수) ~ 2026년 3월 4일(수) 17: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 마감 이후 수정 불가, 자료 업로드 중 마감 시간이 되면 미제출 처리 - 접수 마감일은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인해 오류 발생이 잦으므로 사전 제출 권장 	
제출서류	<p>①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p> <p>② 지원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1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명 기입란에 직인·날인 필수, 한글(HWP)파일 제출 필수 <p>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청 전 업태, 종목 확인)</p> <p>④ 전속계약서 사본 1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6호)</u> 사용 필수 - 계약 당사자 간(단체·작가) 서명 및 날인(간인 필수)된 전속계약서 사본 제출 	
		e나라도움 첨부 제출

■ 심사 및 결과발표

구분	내용								
심사	방법	• 외부 전문 심의위원 5~20인 내외 구성, 서류심사 진행							
	기준	<p>세부항목</p> <p>• 신청단체의 (조직)운영 역량 *정량적 평가(30)</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평가(배점)</th></tr> </thead> <tbody> <tr> <td>서울 외 지역 화랑 여부</td><td>Y/N (10)</td></tr> <tr> <td>1년 이내 2회, 2년 이내 4회 국내·외 전시(페어) 진행 여부</td><td>Y/N (10)</td></tr> <tr> <td>동일 미술작가 계약기간 3년이상 계약 체결 여부</td><td>Y/N (10)</td></tr> </tbody> </table> <p>• 작가 육성계획의 적절성(전속계약 기간, 지원 방향 등) *정성적 평가(10)</p> <p>• 작가의 사업성과 기대도 및 파급효과</p> <p>• 기존 미술시장에 없는 참신한 작품활동을 이어나가는 작가</p> <p>• 작가의 예술성 및 한국미술 기여도, 장르·지역·참여 수 등 종합 고려</p> <p>• (우대사항) 회화 외 조각, 설치, 미디어 등 장르 활동 시 우대</p>	구분	평가(배점)	서울 외 지역 화랑 여부	Y/N (10)	1년 이내 2회, 2년 이내 4회 국내·외 전시(페어) 진행 여부	Y/N (10)	동일 미술작가 계약기간 3년이상 계약 체결 여부
구분	평가(배점)								
서울 외 지역 화랑 여부	Y/N (10)								
1년 이내 2회, 2년 이내 4회 국내·외 전시(페어) 진행 여부	Y/N (10)								
동일 미술작가 계약기간 3년이상 계약 체결 여부	Y/N (10)								
[단체] 신청단체 사업수행 역량 (40)									
일정	심사일정	• 2026년 3월 2 ~ 3주(예정)							
	결과발표	• 2026년 3월 4주(예정)							
	공지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추진절차



■ 문의 및 주요사항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관련 : 전속작가제 지원 운영 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선) 070-4401-5879 / (이메일) support@ipso365.com 유선 문의는 평일(월~금) 10:00~17:00 중 가능(점심시간 12:00~13:00) e나라도움 : 고객센터 1670-95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대표, 작가 단체 또는 대표자가 임금 체불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 선정단체 대표와 계약 체결 작가가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인 경우 지원 불가(친인척 관계로 밝혀진 자는 보조금 환수) 지원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단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동 사업으로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혹은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당해연도 동시 수행하는 지원사업이 3개 이하임을 확약할 수 없는 자(단, 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제외) 학교(초, 중, 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지자체 또는 지자체비로 운영되는 기관 및 단체 기선정된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 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센터가 반납 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기획재정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7조 제4항(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제10조(보조금 교부금 조건) 제1항 제1호 마~아목에 해당하는 단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및 개인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제2호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외 성희롱·성폭력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지원 제외	

	<p>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단체의 운영자가 예술인들과 고용 및 용역 계약시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불공정계약을 체결(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함)하거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된 계약 내용을 미이행할 경우, 해당 단체는 문체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보조금(지원금)의 17% 자부담(1작가 당 300만원) 및 증빙 필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규통장 개설 필수 - 지원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 - 타 통장(대표 명의 포함)으로 지원금 이체 금지 - 임직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거래 금지 -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 -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 지원사업 추진 도중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지침에 따라야 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에 따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동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관련한 모든 책임은 지원단체에 있음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또는 선정 후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지원금은 환수 조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
유의 사항	<p>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p> <p>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p> <p>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p> <p>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p> <p>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임직원 연관(직계존비속 포함)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는 불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보조금법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관련) *제13조(보조금 사용 및 제한) ④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 집행 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와는 거래할 수 없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표자 및 실무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및 이수 확인서 제출

- 선정단체 및 작가 계약서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06호)** 사용 필수
- 센터가 주관하는 조사 응답 필수(시각예술실태조사((구)미술시장실태조사), 전속계약 유지율, 만족도 조사 등)
- 선정자 대상 사업 오리엔테이션 진행 시 실무자 참석 필수
- 선정단체 대표 본인 및 임직원에게 전속작가 대상 전시 기획, 평론 및 번역·감수 사례비 지급 불가
- 센터에서 정한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 정산·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
 -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사 후 정산보고서 제출
- e나라도움 상 집행·정산·실적보고·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
- 보조금은 반드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점검·검증
- 모든 홍보·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로고 삽입
- **[연속 지원(2027년~) 선정 중단]**
 - 보조사업자의 미정산(정해진 마감일까지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자 및 제출서류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자)
 - 미반납(부정수급 및 미정산 등으로 센터의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았지만 반납하지 않은 자)
 - 부정수급(부정수급으로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센터로 통보된 단체 및 개인)
 - 그 외 e나라도움 및 센터 안내 절차 미진행 등

불임**국·공립 미술관 전시 이력으로 인정되는 미술관**

*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내 미술관 분류 기준 적용

연번	소재지		구분	기관명
	시·도	시군구		
1	경기	과천시	국립	국립현대미술관(과천관)
2	서울	종로구	국립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3	서울	중구	국립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관)
4	충북	청주시	국립	국립현대미술관 미술품수장센터(청주관)
5	서울	중구	공립	DDP디자인뮤지엄
6	서울	강서구	공립	경재정선미술관
7	서울	중구	공립	서울시립미술관
8	서울	성북구	공립	성북구립미술관
9	서울	종로구	공립	종로구립 박노수미술관
10	부산	해운대구	공립	부산광역시립미술관
11	부산	사하구	공립	부산현대미술관
12	대구	달서구	공립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13	대구	수성구	공립	대구미술관
14	대구	수성구	공립	대구간송미술관
15	인천	미추홀구	공립	송암미술관
16	인천	중구	공립	인천아트플랫폼
17	광주	북구	공립	광주시립미술관
18	광주	북구	공립	시화문화마을금봉미술관
19	광주	남구	공립	양림미술관
20	광주	남구	공립	이강하미술관
21	대전	서구	공립	대전시립미술관
22	대전	서구	공립	이용노미술관
23	울산	중구	공립	울산시립미술관
24	경기	안산시	공립	경기도미술관
25	경기	이천시	공립	경기도자미술관
26	경기	여주시	공립	경기생활도자미술관
27	경기	고양시	공립	고양시립 아람미술관
28	경기	안산시	공립	김홍도미술관
29	경기	용인시	공립	백남준아트센터
30	경기	성남시	공립	성남큐브미술관
31	경기	수원시	공립	수원시립미술관
32	경기	양주시	공립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33	경기	양평군	공립	양평군립미술관
34	경기	여주시	공립	여주시 미술관 아트뮤지엄 려
35	경기	오산시	공립	오산시립미술관
36	경기	이천시	공립	이천시립월전미술관
37	경기	양주시	공립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
38	강원	강릉시	공립	강릉시립미술관
39	강원	인제군	공립	공립인제내설악미술관
40	강원	양구군	공립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41	강원	고성군	공립	진부령미술관

연번	소재지		구분	기관명
	시·도	시군구		
42	강원	춘천시	공립	춘천미술관
43	충북	충주시	공립	관아갤러리
44	충북	진천군	공립	진천군립 생거판화미술관
45	충북	청주시	공립	청주시립미술관
46	충북	청주시	공립	청주시립미술관 분관(대청호미술관)
47	충북	청주시	공립	청주시한국공예관
48	충남	홍성군	공립	고암이응노생가기념관
49	충남	천안시	공립	천안시립미술관
50	전북	남원시	공립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51	전북	김제시	공립	벽천미술관
52	전북	순창군	공립	순창공립옥천골미술관
53	전북	익산시	공립	익산예술의전당미술관
54	전북	완주군	공립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55	전북	정읍시	공립	정읍시립미술관
56	전북	무주군	공립	최북미술관
57	전남	신안군	공립	1004섬수석미술관
58	전남	진도군	공립	남도전통미술관
59	전남	목포시	공립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60	전남	무안군	공립	무안군오승우미술관
61	전남	보성군	공립	보성군립백민미술관
62	전남	곡성군	공립	아산조방원미술관(휴관)
63	전남	영암군	공립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64	전남	신안군	공립	저녁노을미술관
65	전남	광양시	공립	전남도립미술관
66	전남	함평군	공립	함평군립미술관
67	전남	화순군	공립	화순군립최상준미술관
68	경북	경주시	공립	경주술거미술관
69	경북	경주시	공립	경주예술의전당 알천미술관
70	경북	청송군	공립	군립청송야송미술관
71	경북	김천시	공립	김천시립미술관
72	경북	포항시	공립	포항시립미술관
73	경남	창원시	공립	경남도립미술관
74	경남	김해시	공립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75	경남	진주시	공립	진주시립이성자미술관
76	경남	창원시	공립	창원시립마산문화미술관
77	경남	김해시	공립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78	제주	서귀포시	공립	서귀포시기당미술관
79	제주	서귀포시	공립	소암기념관
80	제주	서귀포시	공립	이종섭미술관
81	제주	제주시	공립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82	제주	제주시	공립	제주도립미술관
83	제주	서귀포시	공립	제주추사관
84	제주	제주시	공립	제주현대미술관